

1. 개정 이유

2. 주요내용

다.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안 별표9)

붙임 친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8. (현행과 같음) <u>29.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u>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② (생략)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종고품으로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1호 및 제2호의 조립 또는 혼합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의 원산지가 5개국 이상이면, 대표국</u>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별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생략) <u>≤신 설></u>	<u>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숫자로 표시(예: “부분품(원재료) 원산지: 미국 외 12개국”)</u>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 1.·2. (현행과 같음) 3. 통신판매 등으로 거래되어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의 별도로 스티커, 풋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13과 같다.
④ (생략) 제81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① 관세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의 거쳐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① ----- ----- 물품 및 거래 -----, -----,
② (생략)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 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격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u>클</u> <u>액</u> 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따른 공인원 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 -- 제조원가란, <u>클</u> <u>액</u> ,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 <u>료비</u> 와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1. ② (생략)	1. ② (현행과 같음)
③ ④ (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상품 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에도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 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u>원료 또</u> <u>는 부품</u> 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 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1. ----- <u>원료(부</u> <u>품)</u> -----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종류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2. 제1호의 원료(부품)의 원산지가 1개국인 경우에는 “원료(부품) 원산지 : 국명”을 표시하되, 2개 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완성품 제조원가의 재 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예: “원료(부품)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산지 : 국명, 국명")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상 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	
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	
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	
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	
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⑥ 제2항에 따른 관정 시, 원산지	⑥ ----- 원가계산 시, 국
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	내산 원재료 입증에 필요한 경우
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별지 제31호 시식에 의한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으
	며, 국내산으로---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별표 9) 국경수출물품의 원산지		(별표 9) 국경수출물품의 원산지	
HS 0108 돼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다. 해당 국가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HS 0108, 0104 돼지, 양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다. 해당 국가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별표 13) <신 설>

통신판매 시의 위산지 표시방법(제77조 관련)

(별표 13) 통신판매 시의 원산지 표시방법(제77호 관련)

- 일반적인 표시방법
 -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해야 한다.
 -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 크기 및 색상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
 - 가. 전자매체 이용
 -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위치를 알려주는 제품 및 화면(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을 첫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나)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다만, 별도의

황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제3조 또는 용역제공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라)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 해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한다.

나. 인쇄매체 사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2)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제도에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 (별지31호)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별지 제31호 서식]

[illegible][illegible]